

12. 연구비 원가구성

- 연구비는 직접비와 간접비로 나눔
 - 직접비 : 인건비, 연구재료비, 연구활동비, 연구과제추진비, 연구수당, 위탁연구개발비로 구성
 - 간접비 : 연구기관이 보유한 자원을 연구수행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
- 출연연은 PBS 시스템에 따라 인건비와 경상경비 중 일부는 정부출연금(비경쟁 방식)으로 지원받고 나머지 부족분은 수탁사업(다른 연구기관과 경쟁)을 통해 확보
- 과제기획, 선정, 평가 등은 기관 자체심의위원회 운영
PBS 제도개선과 연계, 09년부터 융복합연구사업 위주로 재편 운영
- 기관운영 전반에서 기관장이 책임경영

13. 결산 및 잉여금 산출

- 회계결산 : 수입대비 집행실적 현황 등 재무보고에 초점
- 예산결산 : 당초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을 비교, 결산잉여금 등을 확정
※ 예산결산을 사업계획 및 예산 변경(안)의 기본자료로 활용
- 결산잉여금 산출 : 자체수입 O/H 초과액을 계산, 처분가능 잉여금의 규모 산출
 - 회계결산과는 달리 내부인건비 및 순수간접비만을 O/H로 취급
 - 정부수탁, 민간수탁, 기술지원 결산치를 비교, 초과액 산정
 - 기타수입은 초과액 전체를 잉여금 재원으로 보며, 기술료 수입은 잉여금에서 제외
 - 인건비 집행잔액은 연구개발적립금으로 적립되며 경상비 절감액의 처분은 이사회에 서 검토, 확정

14. 사업계획 및 예산(안)

- 연구기관별로 이사회 승인을 거쳐 사업계획 및 예산(안) 수립
 - 정부출연금 집행계획이 국회 승인을 거치면 기관에서 출연금과 자체수탁사업에 대해 계획을 수립하고 이사회가 추인
 - 연구원 일반현황, 비전 및 발전목표, 차년도 사업별 추진계획, 기관운영, 차년도 예산안 및 참고자료로 구분
 - 기관별 인력, 인건비, 경상비, 총예산규모 승인

| 순번 | 부문 | 주요내용 | 시기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|
| ① | 차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(안) 수립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· 정부예산 연계 사업별 달성목표 설정· 기관장 경영목표, 중기전략계획 및 중장기발전계획 참고 | 전년도 11~12월 |
| ② | 전문가 검토 및 이사회 의결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· 연구원 미션과의 연계성 및 수입, 지출 계획의 적정성 등 검토· 전문가 검토의견 반영 수정보완 제출· 이사회 심의.의결 | 전년도 11~12월 |
| ③ | 사업계획 변경 및 이사회 의결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· 이월예산, 능률성과급 및 연구개발적립금 등 결산결과 반영· 변경(안) 검토· 이사회 심의.의결 | 3~4월 |

15. 실행예산 관리

- 실행예산 : 기관장이 사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사업별 세부 집행기준으로서 각 계정의 한도액을 운영방침에 따라 정한 예산
- 현금주의 : 단식예산 제도 채택
 - 현금이 들어오거나 나갈 때 수입과 지출이 계상되는 방식
 - 발생주의 : 현금의 입출이 아닌 수익이 발생하는 시점으로 계상하는 방식
- 실행예산서 구성 : 예산총칙, 예산집행지침, 수지예산총괄표, 수입예산총괄표, 지출예산 총괄표
- 실행예산 관리 : 이사회에서 승인된 연구원 총예산에 대해 예산총람을 작성하고 지출예산 세부내역을 편성하며 집행지침 마련
- 연구개발적립금, 연구개발준비금, 연구재투자적립금 등 자체재원 집행계획 수립 및 운영